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의 번 호	667
-------------	-----

제출년월일 : '98. 4.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정이유

- '97.12.23 산업자원부에서 안산테크노파크를 시범테크노파크 사업 시행자로 지정함에 따라 테크노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98상반기중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 IMF시대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체계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공동애로기술 해결 및 산업구조 고도화, 벤처기업 발굴, 창업지원으로 서해안지역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여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산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테크노파크는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안 제2조)
-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안산시 및 경기도의 출연재산, 중앙 정부의 출연금, 금융기관 및 기업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재산으로 조성하며, 시장은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다.
(안 제3조)
- 테크노파크의 주요사업으로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사업, 벤처기업 창업보육 지원 사업, 연구개발시설 운용사업 등이 있음. (안 제4조)
- 테크노파크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음. (안 제5조)
-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8조)
- 시장은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음.(안 제9조)

□ 참고사항

○ 참고사항

- 관련법규 (덧붙임 참조)
- 통상산업부의 기술연구 집단화단지 지정공문 사본 (덧붙임 참조)
-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덧붙임 참조)
-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덧붙임 참조)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 고도화 및 기술기반 조성을 위한 안산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및운영) ① 테크노파크는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재원조성) ①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안산시 및 경기도의 출연 재산
2. 중앙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재산
4. 기타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중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의 운영경비는 출연재산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4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기술 연구개발사업
2. 벤처기업 창업보육 지원사업
3. 연구개발시설 운용사업
4. 기술과 경영지도등 경영관리 지원사업
5.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유통사업
6. 기술인력 양성사업
7. 시험생산사업
8.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각 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기타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테크노파크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의 사무중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기술기반 조성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협약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회계운용) 테크노파크의 회계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용하며 사업년도는 안산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8조(보고 등)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공업 및 에너지 기술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제5조(기술기반 조성사업) ② 통상산업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 및 단체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기술기반 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 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개방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관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 기술 연구소
7.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한 산업기술정보원
8. 기타 기술력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10조(기술연구의 집단화 지원) ① 정부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 건축물에 입주하여 시설·정보 및 인력 등을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서 현장기술의 공동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을 구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축된 기반을 기술연구집단화 단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 연구개발
2.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3.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4. 신기술 보육 및 창업
5. 연구개발시설의 공동 이용
6. 시험생산
7. 기타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실시)②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주관할 기관(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지정, 기술기반조성사업 과제의 선정 기타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출연등)①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은 사업주관기관이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현물을 포함한다)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이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은 그 출연을 하는 기관 또는 법인과 출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 제95조(사무의 위임 등)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 제30조의 4(파견근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27조의 2(파견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소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